

문서번호	교육지원과-101007	주무관	교육지원팀장	교육지원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5. 11. 16.	박영은	김대환	정연욱	고한석	하철승	11/16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				
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★예산팀장	박종식			

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구의회 동의(안)

2015. 11. 12.

강 북 구
(교육지원과)

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구의회 동의(안)

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 동의록을 얻고자 함.

I 상 정 근 거

- 출자, 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규정
 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 -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예산안 심의 전에 별도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함

II 주 요 내 용

- 내 용: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학재단에 350,000천원을 출연하고자 함.
- 근 거: 「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출연대상: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
- 출연금액: 350,000천원
 - ※ 우리은행 구 금고 협력사업비(총 1,410,000천원) 중 2016년도 출연금액임.
- 출연시기 및 방법: 2016년 2월 중 현금 출연
- 우리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 (단위:천원)

연 도 별	2015년	2014년	2013년	2012년
출연금	360,000	-	-	-

Ⅲ 제 안 이 유

- 꿈나무키움장학재단은 단기성 장학금 지원이 아닌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장학생 수 누적에 따라 장학금 지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.
- 장학재단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기본재산으로 전환되며, 기본재산에서 나온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은행 이자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.
-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.

Ⅳ 추 진 일 정

- 출연금 구의회 동의(안) 구의회 안건 상정: 2015. 11.
- 출연금 구의회 동의(안)에 따른 구의회 심의: 2015. 12.
-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교부: 2015. 2.

붙 임: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 동의(안) 1부. 끝.